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안 제4조제1항)
-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 및 동의 절차(안 제4조제3항)
- 국가위임사무 → 도지사 경유 관계 장관 승인
- 자치사무 → 군의회 동의

○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6조)
- 공개 모집 원칙
- 심사위원에서 적격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9명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무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안 제9조)

-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짐.

○ 수탁기관 지휘·감독(안 제11조)

- 군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 및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음.

□ 참 고 사 항(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같은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장 민간위탁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1조(민간 위탁의 기준)
- 제12조(민간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제13조(지휘·감독)
- 제14조(사무편람)
-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 검 토 의 견

○ 본 조례안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에 의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